

의 안 번호	1531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일 자 : 2019. 3. 14.(목)
- 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3. 14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3. 26.(화)

### 2. 제안이유

- 가. 노외주차장의 최초 20분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완화
- 나.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주차장 요금 감면혜택을 “저공해 자동차” 까지 확대하고,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추가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주차 일부시간에 대한 무료 규정 단서 삽입
  -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 일 때는 무료로 함(별표1)
-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 따라 “저공해 자동차” 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친환경 자동차 감면 대상 확대(안 제6조제4항제10호)
- 다. 상위 법령에서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 반영
  -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(안 제11조의2)

## 4. 근거법규

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

나.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5

## 5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인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근거하여  
저공해 자동차 주차 감면 내용을 추가하고,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를 명확히 하였으며, 노외주차장에 무료 주차시간을 20분 제공 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 하고자 함.
  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근거법규

## 대기환경보전법

### 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

- ⑪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(標識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-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주차장법

제19조의13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 ④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.

## 주차장법 시행령

### 제12조의5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

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.